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4월 1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영의원)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 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 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개정안은 국과연과 기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평가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통합적·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군, 국과연 및 방산업체 등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및 구매시험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 본문에 열거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모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그 외의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으므로 동 단서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